

경인지방우정청 공고 제2024-135호

「경인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점심시간 휴무에 따른 업무취급 시간에 관한 규정(경인지방우정청 훈령 제201조)」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3일

경인지방우정청장

「경인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점심시간 휴무에 따른 업무취급 시간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2인 관서 실효적 지원방안 추진 계획」에 따른 훈령 개정

2. 주요 내용

가. 훈령명 변경

- 현행 : 경인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점심시간 휴무에 따른 업무취급 시간에 관한 규정
- 개정 : 경인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업무취급 시간에 관한 규정

나. 조문 변경

- 제2조(창구업무 취급시간)
 - 현행 : 경인지방우정청 관내에 위치한 관서(출장소, 별정우체국 포함)중 점심시간 휴무를 실시하는 관서의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별표 1과 같다.

- 개정 : 경인지방우정청 관내에 위치한 관서(출장소, 별정우체국 포함)의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하며, 취급 시간이 조정된 관서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창구업무 취급시간 조정)

- 현행 : 제2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여 우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창구업무 취급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개정 : 제2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여 우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창구업무 취급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취급시간 공지)

- 현행 : 제2조에 따라 정한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별표2를 참고하여 안내문 등을 제작하고 이를 공중실 벽면, 출입문 등 고객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 개정 :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정한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별표2를 참고하여 안내문 등을 제작하고 이를 공중실 벽면, 출입문 등 고객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3. 시행일 : 2024. 6. 10.(월)

4. 의견 제출

「경인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점심시간 휴무에 따른 업무취급 시간에 관한 규정(경인지방우정청 훈령 제201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4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인지방우정청 우편영업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경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편영업과 통상제도담당

o 전 화 : 031-8014-3146 (Fax: 0505-005-1252)

o E-mail : jhjin324@korea.kr

o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5(탑동)

경인지방우정청 우편영업과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인지방우정청

(<https://www.koreapost.go.kr> 열린경영/공고)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